

#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
(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)

## 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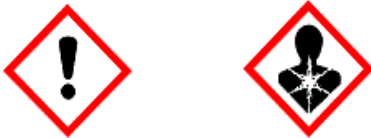
- 가. 제품명 : 코스모셀 (투명)
- 나.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 제한  
 용도 : 시멘트계, 석재등의 발수제(내.외부용)  
 사용상 제한: 용도외 사용을 금함
- 다. 공급자 정보  
 제조회사명 : 성안디앤씨  
 주 소 : 경기 여주시 평장길 112  
 전화번호 : 031)881-6613

## 2. 위험성, 위해성

- 가. 위험성,유해성 분류  
 발암성 : 구분 B  
 생식독성 : 구분 B1  
 심한 눈손상성/ 눈자극성 : 구분2  
 피부 부식성/ 피부자극성 : 구분2

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항목

그림문자



신호어 : 위험

유해.위험 문구

- H315 :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- H319 :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
- H351 :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
- H360 :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
- H373 :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중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.

예방조치 문구

1) 예방

- P201 : 사용전 취급설명서를 확보하십시오
- P202 :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
- P260 : 분진,흠, 가스, 미스트, 증기, 스프레이등을 흡입하지 마시오
- P264 : 취급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.
- P280 : 보호장갑, 보호의, 보안경,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
- P281 :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.

## 2) 대응

- P302+P352 :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
- P305+P351+P338 : 눈에 묻으면 몇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  
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계속 씻으시오
- P314 :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.조언을 받으시오
- P321 : 필요한 처치를 하시오
- P332+P313 : 피부에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 또는 주의를 받으시오
- P337+P313 :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 또는 주의를 받으시오

## 3) 저장

- P405 : 밀봉하여 저장하시오
- P403+P233 : 용기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

## 4) 폐기

- P501 :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

다. 유해.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.위험성(예. 분진폭발 위험성)

화학 물질명	보건	화재	반응성
물 에톡시계실란 에멀전 영업비밀	0 자료없음 자료없음	0 자료없음 자료없음	0 자료없음 자료없음

## 3.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 또는 이명	CAS 번 호	함유량(%)	비 고
물	7732-18-5	85 - 95	
에톡시계실란 에멀전	자료없음	5 <	
영업비밀	자료없음	5 <	

## 4.응급조치요령

## 가. 눈에 들어 갔을때 :

-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
- 다량의 흐르는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15분이상 화학물질이 남아 있지 않도록 씻으시오
- 눈꺼풀 속까지 완전히 씻어내고 가능한 빨리 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으세요
-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을경우 우선 렌즈를 제거하시오

## 나. 피부에 접촉했을때 :

-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
-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
-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
-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

## 다. 흡입했을때 :

- 증기, 가스 등을 다량으로 마신 경우 공기가 신선한 장소로 이동하여 안정 취하시오.
- 호흡이 불규칙적이거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으시오.
- 호흡이 멈추어 있을 경우는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즉시 전문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오.

## 라. 먹었을때 :

- 즉시 물로 입을 씻으시오.
-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.
-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구토가 일어나면 구토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머리를 둔부보다 낮추도록 하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하시오.

마. 의사의 주의사항 :

-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

## 5. 폭발 · 화재시 대처방법

가. 적절한( 및 부적절한) 소화제

- 분말 소화약제, 일반적인 분말, 가스 소화약제
- 분말 소화기, CO2 소화기, 물 분무, 알콜폼 약제
- 탄소 이산화물, 건조 화학분말, 적절한 폼
- 워터젱을 사용한 소화는 피하시오.
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-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
- 화재시 자극성,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
-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
- 일부 액체는 현기증,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를 발생할 수 있음

다.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-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하시오
- 물질 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하시오.
- 탱크가 화염에 휩싸였을 경우에는 접근하지 마시오.
-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.
-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.

## 6. 누출사고시 대처방법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

-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여, 눈, 피부에의 접촉과 흡입을 피하시오.
- 밀폐된 공간에 출입하기 전에 환기를 실시하시오.
- 누출된 물건을 만지지 마시오. 위험 없이 누출을 중단 시킬 수 있으면 중단 시키시오.
- 유출 액체 및 누출 부위에 직접 주수하지 마시오.
-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하시오.
- 전문가의 감독없이 청소 및 처리를 하지 마시오.
- 피부 접촉 및 흡입을 피하시오.
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
- 누출물이 하수시설,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시오.
- 누출량이 많을 경우 119, 환경부, 지방환경관리청, 각 시·도 환경지도과에 신고하시오.

다. 정화 또는 제거방법

- 다량 누출 :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시오.  
누출물질의 처리를 위하여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시오.
- 기준량 이상 배출시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에 내용을 통지하시오.
- 폐기물관리법(환경부)에 의해 처리하시오.
- 소량 누출 :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.
- 용매를 닦아내시오.
- 추후 처리를 위하여 제방을 축조하시오.

-누출된 물질은 잠재 위험성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수거하십시오.

## 7.취급 및 저장방법

### 가. 안전취급 요령

-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피하십시오.
-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(증기,액체,고체)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, 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.
-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십시오.
-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만 취급하십시오.
-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증기를 흡입하지 마시오.
-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 및 장비를 반출하지 마시오.

### 나. 안전한 저장방법

-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십시오.
-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지 마시오.
- 용기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.
- 원래의 용기에만 보관하십시오.
- 피해야할 조건 및 물질에 유의하십시오.
- 밀폐용기에 담아 수거하십시오.

## 8.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### 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※ 제품에 대한 노출 기준자료가 없으며, 구성 성분별 자료 기재(참고)

- 1) 물 : 자료없음
- 2) 에톡시계 실란 에멀전 : 자료없음

### 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-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소 배기장치 또는 회석식 배기시설을 설치하십시오.
- 적정 제어풍속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십시오.
- 작업공정이 노동부 허용기준 및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.

### 다. 개인 보호구

#### 호흡기보호

-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합니다.
-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십시오.
- 유기용제 정화통을 장착한 화학용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.
- 건조도막을 샌딩 등으로 제거할 경우는 분진 및 가루 등에 적합한 호흡보호구(방진, 방독, 송여과식 마스크 등)을 착용하십시오.

#### 눈 보호

-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.
-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 및 비상 세척설비를 설치하십시오.

#### 손 보호

- 폴리에틸렌, 부틸러버, PVC 등의 유기용제 또는 화학약품이 투과하지 않는 불침투성 보호장갑을 착용하십시오.

#### 신체 보호

- 폴리에틸렌, 부틸러버, PVC 등의 유기용제 또는 화학약품이 투과하지 않는 불침투성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십시오.

#### 위생상 주의사항

-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하십시오.
- 작업 종료시 또는 음식 섭취 전 반드시 손 등의 신체를 세척해야 하며, 사용한 근무복은 세탁완료 후 재사용토록 하시오.

## 9. 물리화학적 특성

가. 외관	유동성 액체
성상	우유빛 투명
색상	순한 자극성 냄새
나. 냄새	자료없음
다. 냄새역치	자료없음
라. pH	6.5 - 8.5
마. 녹는점/어는점	< 0℃
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	100 ℃
사. 인화점	없음
아. 증발속도	자료 없음
자. 인화성(고체,기체)	자료 없음
차. 인화, 폭발범위의 상한/하한	해당 없음
카. 증기압	자료 없음
타. 용해도	수용성
파. 증기밀도	1.0 이상
하. 비중	0.95 - 1.05
거. n-옥탄올/물분배계수	자료 없음
너. 자연발화온도	자료 없음
더. 분해온도	자료 없음
러. 점도	< 200 sec, Jahn cup No.1 / 25℃
머. 분자량	자료 없음

## 10. 안정성 및 반응성

#### 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

- 권장된 보관과 취급시 상온, 상압 하에서 안정함.
-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.
-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.
- 비인화성,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/독성 흡을 발생할 수 있음.

#### 나. 피해야 할 조건

- 열, 스파크, 화염 등 점화원
- 혼합금지 물질 및 조건을 피하십시오.

#### 다. 피해야 할 물질

- 가연성 물질, 산, 염기 또는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할 것

#### 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

- 일산화탄소, 이산화탄소, 기타 유독성 탄소화합물.

## 11. 독성에 관한 정보

가. 가능성이 높은 경로에 관한 정보

- 호흡기 : 자료없음
- 경구 : 자료없음
- 피부 :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
나. 건강 유해성 정보 : 자료없음  
자료없음

## 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생태독성

- \*어류 : 자료없음
- \*갑각류 : 자료없음
- \*조류 : 자료없음

나. 잔류성 및 분해성

- \*잔류성 : 자료없음
- \*분해성 : 자료없음

다. 생물농축성 및 생분해성

- \*생물농축성 : 자료없음
- \*생분해성 : 자료없음

라. 토양이동성 : 자료없음

마. 기타 유해영향 : 자료없음

## 13. 폐기시 주의사항

가. 폐기방법 :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

나. 폐기시 주의사항 (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)  
관련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, 용기를 폐기하십시오

## 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 유엔번호 : 보기없음

나. 적정 선적명 : 해당없음

다. 운송에서의 위험등급 : 해당없음

라. 용기등급 : 해당없음

마. 해양오염물질 : 자료없음
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안전 대책

- \*화재시 비상조치 : 해당없음
- \*유출시 비상조치 : 해당없음

## 15. 법적 규제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- \* 작업환경 측정물질

- \* 노출기준설정물질
- \* 관리대상유해물질 :
- \*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:없음

나.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자료없음

- \*유독물 : 해당없음
- \*관찰물질 : 해당없음
- \*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: 해당없음
- \*사고대비물질 : 해당없음
- \*취급제한물질 : 해당없음

다.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자료없음

다.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
라.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규제 :

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[별표]에 의해 지정폐기물[페페인트와 페레커]에 해당됨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..

- \* 국내규제
  -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: 자료없음
- \* 국외규제
  - 미국 관리정보
    - OSHA규정 : 자료없음
    - CERCLA규정 : 자료없음
    - EPCRA 302규정 : 자료없음
    - EPCRA 304규정 : 자료없음
    - EPCRA 313규정 : 자료없음
    - 로테르담 협약 물질 : 해당없음
    - 스톡홀름 협약 물질 : 해당없음
    -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: 해당없음

EU 분류정보

- 확정 분류 결과 :자료없음
- 위험문구 : 해당없음
- 안전문구 : 해당없음

## 16.기타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 :

- . 한국산업안전공단의 MSDS 작성 프로그램
- . 노동부 화학물질의 분류.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
- . 한국산업안전공단 제공 MSDS 자료
- . 환경오염 유해화학물질 편람.
- . IUCLID (경구,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, 어류)

나. 최초 작성일 : 2011.7.1

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

- . 최종 개정횟수 : 2
- . 최종 개정일자 : 2014. 12.1.

라. 기타

- .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사용, 취급, 보관, 운송 또는 본 제품에 노출시에

필요한 정보이며, 공장설비, 작동 및 관리에 대한 지침서 또는 본 물질을 취급하는  
작업자를 위한 지침서로써 제작됨.

- . 본 자료는 원료업체로부터 접수한 원료 MSDS를 기초로하여 작성된 것으로 가장 신뢰성이  
높은 것으로 판단하나 본 MSDS에서 발생하는 재해 및 기술적, 법적 문제등에 대해서  
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